

#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 요령

## 1. 지도(계도)시 준비사항

- √ 공무원 또는 감시단증
- √ 업소 배부용 안내문
- √ 필기도구(책받침) 및 수첩
- √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
- √ 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
- √ 단정한 용모
- √ 단속결과 복명서(확인서)

## 2. 감시활동시 추진사항

- √ 사전협의 : 환경감시단, 또는 경찰서(보건위생과)와 사전 협의
  - 감시구간, 시간 등
- √ 지도(계도) 감시 활동 시
  - 출입구 -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 정중한 태도와 명확한 언어구사
  - 방문 목적(지도단속) 설명
  - 배부용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주의 안내를 받아 외견상 확인
    - 업주의 명함 등을 받아 명칭, 주소, 대표자 등 기본사항을 기재
  -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함.
  - 지도감시 요원들이 한꺼번에 중구난방식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

## 3. 지도감시활동 결과 적발시

- √ 영업주의 악화된 감정을 고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극적이지 않도록 함.
-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추후 반드시 확인)
- √ 중한 위반사항에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향후조치에 대하여 안내
  -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주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날인거부 시에는 **'인지 후 날인거부'**라고 기재 할 것
  - 경찰서 고발, 과징금부과, 의견제출 절차 등
  -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 감시활동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 협조 하에 조치함.
- √ 개인적 활동은 자제하고 항상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것

##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안내문

###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등

#### -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 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불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는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뒷면 계속〉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10시~오전5시)
  - 관련법 : 공중 위생관리법,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동법제2조제4호]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본드,신나), 칼라폰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 청소년 유해행위 】

-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문의사항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 02)901-6303, 팩스 901-6309)

# 강 북 구 청 장

- 청소년유해업소 -

# 계도 · 단속 결과 복명서

명에 의거 2016년 월 일 : ~ : 까지 관내에 출장하여 청소년유해업소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년 월 일

단속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도·단속현황

구분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	무도장
				정종대포 선술집	호프 소주방	카페			
계									

이용업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제공업				PC방 등 기타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적발(위반)업소 현황

연번	업종	업 소 명	소 재 지 (연락처)	업주명	면적 (㎡)	위 반 내 용	처분양정

□ 점검요원 사전교육

- 교육일시 : 2016년 월 일 : ~ :
- 대 상 자 : 강북구 유해환경감시단원 명
- 교육내용 : 청소년유해업소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요령 자세 등

□ 단속내역

연번	업종	대표자	신고 (허가) 번호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진 술 서

##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2. 진술내용

2016.

위 진술인 :

(인)

강북구청장 귀하

# 진 술 서(업주용)

## 1. 영업장 현황 및 진술자 인적사항

- |              |           |
|--------------|-----------|
| ○ 허가(신고)번호 : | ○ 업 종 :   |
| ○ 대표자 :      | ○ 업 소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2. 진술내용

위 사실을 자인합니다.

2016. . .

위 진술인 : (인)

강북구청장 귀하

# 확 인 서

허가(신고)번호		업 종		대표자	
업 소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소규모(m <sup>2</sup> )	

본인은 상기업소의 \_\_\_\_\_ 로써 2016. . . : \_\_\_\_\_ 경  
 단속반에게 점검 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적발내역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단속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년 도	책 호	일련번호	검 인
2016			

**강북구청장 귀하**